

의안번호	2218828
의 퇴 인	조배숙의원
회 답 일	2026.9.9.
추계번호	26C2350

조직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6조 (수사 지원 및 교육)	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은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를 승인하거나 보고받은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수사에 필요한 인적·물적 지원을 하고, 전문지식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및 수사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	의무규정
2	안 제17조 (수사자문위원의 수사 참여 및 자문)	수사기관은 조직사기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피의자, 변호인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금융, 회계, 정보통신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자문위원(이하 “수사자문위원”이라 한다)을 지정하여 수사절차에 참여하게 하고 자문을 들을 수 있음	재량규정
3	안 제42조(영상 녹화 및 보존 등)	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장치로 녹화(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하며, 이하 “영상녹화”라 한다)하고, 그 영상녹화물을 보존하여야 함	의무규정
4	안 제45조(보조금)	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한 조직사기 피해자 지원법인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법인의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음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6조 (수사 지원 및 교육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17조 (수사자문위원의 수사 참여 및 자문)	
3	안 제42조(영상 녹화 및 보존 등)	
4	안 제45조(보조금)	

2. 상세 사유

□ 수사 지원 및 교육(안 제16조)

- 제정안에 따라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를 위해 사법경찰관에게 수사에 필요한 인적·물적 지원을 하고, 전문지식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및 수사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다만,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 건수 및 수사에 수반되는 인적·물적 지원 규모와 수사방법 및 수사절차 등에 관한 교육 대상자 수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가 곤란함
- 참고로, 경찰청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마약범죄 위장수사 작전지원을 위하여 위장수사 활동 지원 예산으로 34억 2,000만원¹⁾, 위장수사관 양성 교육 예산으로 4억 9,200만원²⁾이 편성되었고,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지원 예산으로 2억 6,800만원³⁾이 편성되었음

□ 수사자문위원의 수사 참여 및 자문(안 제17조)

- 제정안에 따라 수사자문위원을 수사절차에 참여하게 하고 자문을 구할 경우 수사자문위원에게 수당, 여비, 일당 및 숙박료 지급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게 됨
- 다만, 수사자문위원을 참여하게 하여 자문을 구하는 횟수를 현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고, 수당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추계가 곤란함

□ 영상녹화 및 보존 등(안 제42조)

- 제정안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장치로 녹화하여야 하는 경우 관련 장비나 장소 마련 등을 위하여

1) 위장신분제작 387백만원 + 위장차량 1,189백만원 + 위장작전장비 178백만원 + 위장주거지 1,057백만원 + 위장사무실 운영 309백만원

2) 국내 강사 교육비 401백만원 + + 국외강사 통역비 및 강의실 대관 67백만원 + 해외 수사기법 교육비 24백만원

3) 위장수사 기법 직무교육 30 + 휴대전화 구매 8(10대x777천원) + 휴대전화 요금 77(43팀x30천원x5대x12개월) + VPN회선 비용 13(43팀x2개x150천원) + 위장수사 차량 임차료 140(700건x0.2백만원)

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- 다만, 각 수사기관별로 현재 구비하고 있는 장비·장소 활용 여부 및 추가
수요에 대하여 현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곤란함

□ 보조금(안 제45조)

- 제정안에 따라 조직사기 피해자 지원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
갖추어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하고, 등록된 법인에 대하여 운영 또는 사업에
필요한 경비를 보조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함
- 다만, 현시점에서 등록할 조직사기 피해자 지원법인의 수와 각 법인이 수
행할 사업 내용 등을 알 수 없어 보조금 규모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곤
란함
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, 현시점에서 제정안에 따른 지출
증가액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, 제정안은 「의안
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
사유에 해당함

Ⅲ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박은비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은비	02-6788-4831	ebpark@nabo.go.kr